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9

제출년월일 : 2009년 1월 21일
제　출　자: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공직자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
2. 개정근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제59조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 제5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표현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
      (안 제7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규제신설, 규제폐지, 규제완화, 규제강화)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2008.11. 5 ~ 11.24(의견없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법령준수)"를 "(근무기강의 확립)"으로 한다.
제13조 단서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봉사)①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사를 분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자인 주민의 수임자로서 항상 주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삭제 >
제5조(친절) 공무원은 모든 업무를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친절하며,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준수)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 ② ------------------------------.
제13조(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 ------------- --------- ------.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